

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(팹리스 일관지원) 창업기업 모집공고

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'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'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「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(DIPS)」 내 고성장 분야(팹리스 등)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< (참고)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 주요 공고 일정(안) >

구분	주요 내용		일정
① 사업화	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		
DIPS	대상	·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기술별 스타트업	[공고]
	규모	·총 200개사, 최대 2억원(기업당 평균 1.5억원)	'25.12.29
Global DIPS	대상	·DIPS(23~25년) 사업 졸업기업 중 우수기업	폐쇄형
	규모	·총 15개사, 최대 5억원(기업당 평균 3.5억원)	(선정기업)
② 프로그램	기술 고도화, 개방형 혁신, 투자·연계 등 3대 초격차 프로그램 운영		
기술고도화 (TECH-UP)	팹리스 일관지원	대상 ·NPU 등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규모 ·10개사, 최대 2.5억원(기업당 평균 2.0억원)	[공고] '25.12.29
	NPU 융합	대상 ·국내 NPU 협업을 희망하는 AI 스타트업 규모 ·10개사, 최대 1억원	폐쇄형 (선정기업)
	출연연 융합	대상 ·출연연 기술이전 및 기술협업 희망 스타트업 규모 ·20개사, 최대 1억원	폐쇄형 (선정기업)
개방형혁신 (LINK-UP)	도메인 AX	대상 ·제조, 바이오, 콘텐츠, 금융 AX 협업 희망 스타트업 규모 ·40개사, 기업당 1억원 내외	폐쇄형 (선정기업)
	Vertical 챌린지	대상 ·LG, 퀄컴 등 AI 가전 분야 협업 희망 스타트업 규모 ·총 23개사, 기업당 1억원 내외	[공고] '26.3월(예정)
	LLM 챌린지	대상 ·독자 파운데이션모델 LLM 활용 희망 스타트업 규모 ·총 25개사(모델별 규모 상이), 기업당 1억원 내외	[공고] '26.3월(예정)
	Fabless 챌린지	대상 ·삼성전자, SK, DB 등 파운더리 협업 희망 스타트업 규모 ·5개사, 기업당 1억원(8인치)/2억원(12인치) 내외	[공고] '26.4월(예정)
	Platform 챌린지	대상 ·플랫폼 기업 협업 중소·소상공인 AI 챌린지 규모 ·5개사, 기업당 1억원 내외	[공고] '26.5월(예정)
	Beauty 챌린지	대상 ·뷰티·헬스케어 분야 대·중견기업 협업 AI 챌린지 규모 ·5개사, 기업당 1억원 내외	[공고] '26.5월(예정)

* 사업별 개별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모집·선정

1

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AI(NPU 등), 전력 등 팹리스 스타트업에 설계자산(IP), 시제품 제작(MPW) 등을 일관 지원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연계
- **지원대상** : 창업 10년 이내 팹리스 스타트업
-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('26. 3월 ~ 12월, 10개월)
- **선정규모** : 10개사
- **지원내용** : ①사업화 자금, ②프로그램 (기술·협업·투자), ③투자·연계 등

구분	세부항목	주요 내용
사업화 자금	① 1년 지원 ('26년)	· 사업화 자금 최대 2.5억원(평균 2.0억원 내외)
팹리스 지원 프로그램	②-1. 팹리스 설계(IP)	· 설계(IP), 검증(EDA Tool) 등 설계 SW 지원
	②-2. 시제품 제작	· 파운더리 협업을 통한 시제품(MPW) 제작
	②-3. 글로벌 진출	· 글로벌 전시회 참가 등 글로벌 진출 지원

2

세부지원내용

※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 가능

① 사업화 자금				
정부지원 사업비 70% 미만	· 최대 2.5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			
	★ 재료비, 외주용역비, 기계·장치비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			
자기부담 사업비 30% 이상	★ 타 창업지원사업 중 '창업사업화 자금'을 지원하는 사업은 동시수행 불가			
	· 총 사업비(정부지원+자기부담)의 30% 이상 자기부담금 발생 (현금·현물 제한 없음)			
	★ 협약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필수 제출 (☞ 선정 시 안내)			
★ 현물(보유한 기자재 등)은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%로 계상				
★ 매년,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				
예시	정부지원 (70% 미만)	자기부담 (30% 이상)	총 사업비 (100%)	
	2.5억원	69.4%	1.1억원	30.6%
② 초격차 프로그램				
기술 프로그램	· 국내외 반도체 수요기업(대·중견·중소기업)과의 기술 파트너링, 국내 파운드리 연계를 통한 MPW 제작 지원, ARM 설계자산(IP)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무상 제공			
개방형 혁신	· 대·중견 네트워킹, 해외 바이어 발굴,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·중견기업의 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(오픈 이노베이션) 프로그램 지원			
투자유치	· 투자유치 교육·멘토링,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,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·VC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			
③ 후속 지원				
후속지원	· 차년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(DIPS) 신청 시, 우대 혜택 제공 (가점 2점)			

3

신청자격 및 요건

- **신청자격** : 초격차 12대 기술을 보유하고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,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(기업)

〈 신청 자격 세부 조건〉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한 기업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(**붙임 2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
※ **국외창업** : 신청자격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

국외 창업의 정의 및 지원조건	
법령	· 중소기업창업 지원법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, 「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」 등(24. 8. 28. 시행)
정의	· 대한민국 국민*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여,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(단, 신산업 창업분야는 10년 이내) * 개인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포함
기본 요건	·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외법인 ·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·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*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*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일 것
선택 요건	※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,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
	① 대한민국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 법인이 있고,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간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- (모회사 법인) 국외 창업 요건에 따라 국외 창업기업을 설립한 국내 법인 - (자회사 법인)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, 해당 국외 창업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(국외 창업기업이 국내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보유) - (사업 연관성) 국내 법인과 국외 창업기업 상호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② 대한민국 내 영업소(상법 614조 근거)를 설치·운영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경우

□ **신청 제외 대상** ※ 법인의 경우, 법인 대표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또는 변제 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1. 일반유희주점업
2. 무도유희주점업
3. 카지노 운영업
4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5. 그 외 경제질서,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
이력이 있는 자(기업) 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1. '20~'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(BIG3) 지원사업
2. '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(신산업 스타트업 육성) 지원사업
3. '24~'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

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
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, [붙임 1] 참고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「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-648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.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
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·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(기업)

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4

접수방법

□ **접수기간** : '25.12.29(월) ~ '26.1.23(금), 15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* 신청·접수는 15:00에 종료되며, 마감시간까지 "제출완료"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5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신청방법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
※ 실명인증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※ 기업인증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※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별첨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대표자 본인 이외에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**탈락 처리**
- ② 사업 신청 시 **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택**
*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, 프로그램 등 제공 (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)
**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'주관기관'과 시스템 접수 '주관기관' 동일 여부 필수 확인
※ **상이한 경우, K-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**

□ 제출 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 (별첨 1 양식)

- *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*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(한글파일) 외 자유행식(MS WORD, PPT 등)으로 제출 가능 (단, 사업계획서 목차 항목은 필수 작성하며, 목차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**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별도 발표자료(PPT) 제출,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(해당 시)

제출서류		제출 방법	비고
필수	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자동 생성	-
	② 사업계획서	온라인 제출	용량 제한 (30MB)
	③-1 법인등기부등본	온라인 제출	
	③-2 사업자등록증	마이데이터* 또는 온라인제출	
해당시	[가점] 연구원 스타트업	온라인 제출	
	[가점] '25년 초격차(Micro DIPS, 챌린지) 선정기업	제출 불요	
	[가점] 창업도약패키지(딥테크 분야)	제출 불요	
	[가점] OpenData x AI 챌린지	온라인 제출	
	[가점] CES 2026 혁신상	온라인 제출	

* '공공마이데이터' 정보제공 동의 시,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제출 가능(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온라인 제출)

**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·접수 시 제출하며,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5

평가 및 선정절차

□ 평가절차 : 1단계 서류평가 (기술성), 2단계 발표평가 (혁신·성장성)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 검토	② 서류 평가	③ 발표 평가	④ 최종 선정
신청 자격 등 요건·기준 검토	사업계획서 기반 서면 평가 (선정 규모의 1.5배수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
'26.1.20.~3.20.	'26.1.26.~2.13.	'26.2.19.~3.6.	~'26.3.20.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평가 일정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및 가점 여부를 확인하고,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(최종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)

※ 가점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(중복 가능, 최대 5점)

〈 서류 평가 가점 항목 〉

구분	가점 부여 기준	점수
연구원 스타트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공공) 대표자(혹은 공동/각자대표)가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 연구기관,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,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기업 · (민간) 대표자(혹은 공동/각자대표)가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 전담부서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소속된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자격요건*을 갖춘 경우 <p>*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등에 따른 자격 요건</p>	5점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증빙서류</td> <td>재직·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,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소, 연구조합 등 지정 증빙서류</td> </tr> </table>	
증빙서류	재직·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,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소, 연구조합 등 지정 증빙서류	
초격차 선정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 챌린지* 선정기업 * 팍리스, 버티컬 AI, 온디바이스 AI, LLM AI ·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(Micro DIPS) 선정기업 	2점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증빙서류</td> <td>제출 불필요</td> </tr> </table>	
증빙서류	제출 불필요	
창업도약 패키지 (딥테크 분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5 창업도약패키지(딥테크 분야) 선정기업 	2점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증빙서류</td> <td>제출 불필요</td> </tr> </table>	
증빙서류	제출 불필요	
OpenData x AI 챌린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5년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진출 기업 	2점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증빙서류</td> <td>2025년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진출 증빙</td> </tr> </table>	
증빙서류	2025년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진출 증빙	
CES 혁신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(최고 혁신상 포함) 	1점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증빙서류</td> <td>CTA 공식 수상 증빙 (인증서, 이메일, 인증 마크 등)</td> </tr> </table>	
증빙서류	CTA 공식 수상 증빙 (인증서, 이메일, 인증 마크 등)	

* 사업 신청 시, 가점 관련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가점 미적용

** CES 혁신상을 2개 이상 수상한 경우에도 가점은 최대 1점 부여

- ③ **발표평가** : 글로벌 협업 수요, 융합 가능성, 글로벌 투자 수요 등 혁신성·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평가(20분 내외, 발표+질의)
- 발표평가 시, 별도 국민평가단이 발표평가장 내 입장하여, 평가과정 내 불공정, 부정행위 등 모니터링 시행
- ④ **최종선정** : 신청자격에 충족하면서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선정
- 발표평가 고득점자로 선정되어 주관기관으로부터 최종 선정예정자 통지를 받은 경우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의무
 - 단, 제출 기간 내 협약체결확약서 미제출 및 신청자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 취소
 -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지
 - 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 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 - 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될 수 있음

〈 최종선정 대상자의 ‘협약체결확약서 제출’ 〉
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 ‘협약체결확약서’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(팍리스 일관지원)」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- ※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‘제외’됩니다.
- 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- ※ 제출한 ‘협약체결확약서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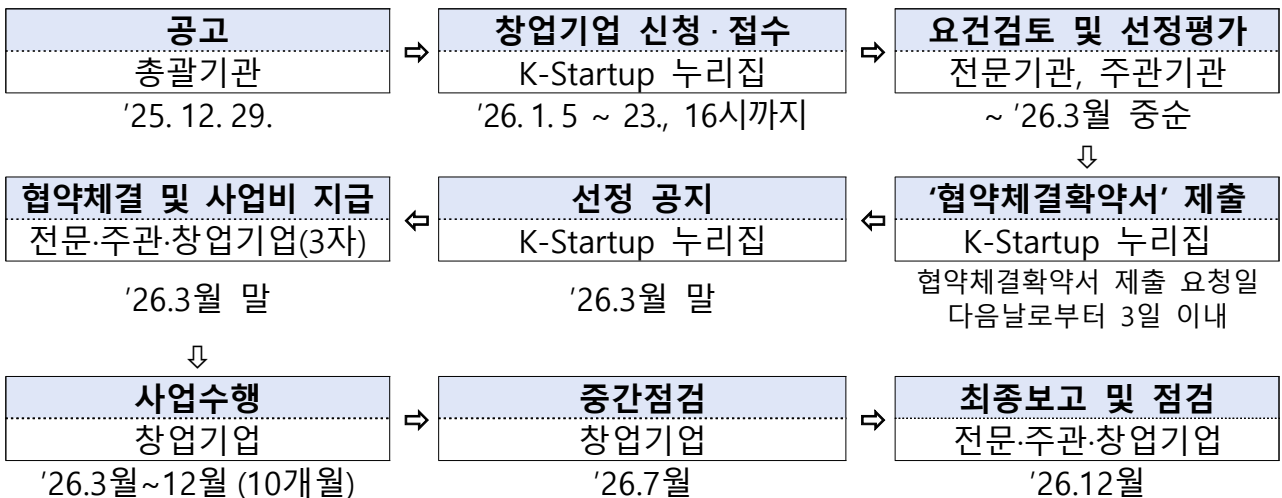
□ **평가지표**

- **서류 평가** : 글로벌 대비 기술 수준, 기술개발 가능성과 차별성, 대표자(팀) 역량 및 BM 등 기술성을 중심 평가
- **발표평가** : 기술·제품·서비스 사업화 전략 및 투자가능성, 외부 협력 가능성, 글로벌 진출전략 등을 중심으로 평가

< 평가지표 주요 내용(안) >

구분	항목	주요 항목	평가내용
서류 평가	기술성	기술 수준 및 우위	·글로벌 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, 차별성 등
		기술개발 가능성	·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 가능성 등
		기술개발 역량	·연구조직(인력), 협력 기관(기업) 등 기술 개발(고도화) 역량
	성장성	기술 고도화 계획	·보유 기술, 제품, 역량 등에 대한 기술고도화 계획의 적정성
		사업화 전략	·기술 고도화, 사업화 등 중장기 사업 추진 로드맵의 적정성
		성장 전략	·투자유치, 개방형 혁신 등 성장 전략의 적정성
발표 평가	혁신성	사업 가능성	·기술, 제품, 역량 등 기술성 대비 사업화 추진 전략의 혁신성
		융합 가능성	·동종, 이종 기술 제품 등 산업 융합 가능성 및 혁신성
		협력 가능성	·국내외 대·중견기업 개방형 혁신, 투자유치 등 협력 가능성
	글로벌	글로벌시장 수요	·글로벌 대·중견기업 수요 등 시장 적합성(PMF)
		글로벌 진출 준비	·글로벌 진출 준비 단계 및 현황,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
		글로벌 진출 전략	·글로벌 진출 전략의 타당성 및 수행 역량

□ **추진 일정** 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 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센터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**신청 시 유의사항**

- 사업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자는 K-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(전화번호·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)를 현행화하여야 하며,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
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위조·변조·표절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
 - 단, 20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
 - * **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**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20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
-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·처리·관리가 가능해야 하며,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

□ 평가 중 유의 사항

- 신청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미제출 등 사유로 신청 자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전체 평가 과정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반드시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
 - * 단, 천재지변 또는 외국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평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으로 허용 (대표자 위임)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회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·사업계획서·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위조·변조·표절, 도용, 누락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기업에게 있음
 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 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 - 동 사업의 수사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 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 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 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□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세부관리기준」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, 창업진흥원,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를 현금으로 대응하는 경우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7

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서울대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
(02-880-8741, 02-880-8742)

붙임 1

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

※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

※ 사업 목록은 2026년 사업 기준이며,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(24년, 25년 등) 동시수행 가능

※ 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창업지원사업은 동시수행 가능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팀)	중소벤처기업부
3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기창업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5	· 창업도약패키지(일반형)	중소벤처기업부
6	· 창업도약패키지(딥테크 특화형)	중소벤처기업부
7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	중소벤처기업부
8	·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	중소벤처기업부
9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창업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프리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1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포스트팁스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13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14	· 제품화 ALL-In-One 팩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	중소벤처기업부
16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7	· AI·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	과학기술정보통신부
18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기후에너지환경부
19	·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0	·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1	·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2	·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5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·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6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7	·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8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9	· (콘텐츠)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30	· (콘텐츠) 투자 연계 창업도약	문화체육관광부
31	·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	통일부
32	·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	통일부
33	·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	해양수산부
34	·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	산림청
35	· 경북·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36	·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평화 창업 지원사업	방위사업청

붙임 2

창업여부 기준표

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 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10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	
		이종	창 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		
법인 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10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 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
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
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
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 2020.10.8. 이전에
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
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
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("개인사업자 설립일
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)

② 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
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
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